

# 현물환거래약정서

☞하나은행 앞

20 . . . . .

본인 \_\_\_\_\_ (인)

(사업자번호/생년월일 \_\_\_\_\_ )

주 소

본인은 본 자료를 (수령) 하고 자료의 (내용) 에 대해 (설명) 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수령필 (인)

본인은 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현물환거래를 함에 있어 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의 각 조항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적용범위)

이약정서는현물환거래에적용된다.

### 제 2 조 (용어의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는 다음 각 항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하고 특별히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금융시장의 관행에 의하는 것으로한다.

1. “현물환거래”라 함은 내국통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를 당일(value today)결제, 익영업일(value tom)결제 혹은 익익영업일(value spot)결제로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2. “금융시장”이라 함은 은행이 제 1 항의 거래를 행하고 있거나 행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금융시장, 기타 동 거래가 행하여지고 있는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모든 금융시장을 포함한다.
3. ”시장가격 또는 시장환율”이라 함은 거래체결시점에서 실제로 은행간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 또는 환율을 말한다.
4. “직거래”라 함은 고객이 제 13 조 제 1 항의 각 항목들을 결정함에 있어 은행의 영업점이 아닌 본점의 소관부서와 직접 거래함을 말한다.
5. “개별거래”라 함은 본 약정서의 적용을 받는 각 거래를 말한다.
6. “영업일”이라 함은 국내에서 은행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고, 금융기관간 외환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 제 3 조 (적용법규)

이 약정서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관련규정 및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르고, 이들에게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거래와 관련된 국내의 법률 및 규정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 제 2 장 유효거래요건

### 제 4 조(거래의 적용 및 성립 등)

- ① 본 약정서는 거래당사자들이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한 거래를 제외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에 본 약정서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 실행하는 모든 현물환거래에 적용된다.
- ② 개별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서면, 전화, 팩스, 구두, 기타의 방법으로 거래조건에 합의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 ③ 개별 거래가 성립되면 은행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우편, 인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고객에게 교부한다.
- ④ 본인은 은행으로부터 거래확인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해당 거래확인서가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확인서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⑤ 거래확인서는 각 개별거래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며, 거래확인서 작성 및 교부 전이라도 개별거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⑥ 거래확인서는 이 약정서와 통합되어 하나의 계약을 구성하고,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이 약정서와 상치되는 경우에는 거래확인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⑦ 은행은 거래상대방의 동의 하에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고 분쟁발생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거래의 성립이 우선으로 확정되는 경우 동의하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 5 조 (환율의 결정범위)

모든 거래의 환율은 거래일 현재 value date 별로 적용되는 시장환율의 상하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 제 6 조 (거래한도의 설정)

모든 현물환 거래에는 고객별로 그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제 3 장 계약불이행 등

### 제 7 조 (계약불이행 등)

- ① 본인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1 항 내지 제 5 항 각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각 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과 체결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② 본인이 이 약정서에 근거한 계약상의 채무 또는 은행에 대한 어떠한 채무라도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은행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6 조에 따라 예치한 담보금 등을 이 약정에 의한 채권, 기타 은행의 채권과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계하거나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제 8 조 (계약의 변경, 취소등)

- ① 본인 및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별계약의 결제일 또는 만기일, 기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에 은행이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동 사유가 해소된 후 가장 빠른 은행 영업일 또는 양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에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 ② 거래내용의 변경 및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대거래로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합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9 조(기한 전 거래 종료시의 정산)

반대 거래방식에 의하여 기한 전 거래를 청산 또는 종료할 경우 정산 금액은 정산 시점의 환율, 양국간의 금리 차이 등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계산 주체인 은행이 공정하게 계산한 거래의 가치나 해당 거래의 대체 비용 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 제 10 조 (지연배상금)

본인이 은행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날보다 늦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날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행 여신연체이율 ( )%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제 11 조 (비용 등의 부담)

이 약정에 의한 현물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등에 대하여는 은행과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며, 계약의 변경, 해지 또는 불이행의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및 손해에 관하여는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 제 4 장 직거래

#### 제 12 조 (직거래의 방식)

- ① 본인이 제 2 조 제 4 호에 따라 본점의 소관부서와 직거래를 할 경우 실제 은행과 거래를 할 본인 또는 1 인이상의 대리인을 지정, 통보 하며 동 대리인이 변경될 경우에도 정해진 직거래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은행 앞 통보한다.
- ② 직거래는 녹음된 전화 등으로 거래가 성립되며, 동 내용의 확인을 위해 은행은 해당 내용의 거래확인서를 본인이 신청시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fax 등으로 송부하고, 본인은 거래확인서 수령 후 지체 없이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합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제 13 조 (직거래시의 결정사항)

- ① 직거래시 은행의 본점 소관부서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금액
  2. 거래통화
  3. 거래방향
  4. value date
  5. 거래환율
- ② 전항의 직거래에 따른 결제는 거래 영업점에서 이루어지며, 위 기재사항 이외 거래한도, 담보의 종류와 담보금의 예치 및 처분 기타 거래와 관련한 사항은 영업점에서 결정한다.

### 제 5 장 지급방법 등

#### 제 14 조 (지급방법)

- ① 본인과 은행은 개별거래의 조건에 따라 매 지급일에 원화 또는 외화로 각자 지급할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 ② 본인과 은행 상호간의 모든 지급은 상계 없는 총액 지급(gross payment)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거래의 조건에 따라 차액 지급(net payment)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결제일은 영업일 이어야 하며, 부득이 결제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

#### 제 15 조 (계약통화 이외의 통화)

법원의 판결 또는 청산에 따른 배당 등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계약 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급 또는 상환할 경우, 계약 통화 이외의 통화에 대하여 지급 또는 상환 당시의 은행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을 적용한다.

제 16 조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

본인은 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약정서에 규정된 현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본인의 권리나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관계법령의 준수)

본인은 은행과 이 약정서에 규정된 현물환 거래를 함에 있어 『외국환거래법』 및 당해 계약과 관련된 국내의 모든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확인

- 상기 거래자가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자필로 기명 및 날인(서명)하였음을 확인

확인자 : 직 · 성명 \_\_\_\_\_ (인)

점검자 : 직 · 성명 \_\_\_\_\_ (인)

※ 이 약정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